

● 제30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783)

2021. 12. 17.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장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83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문장길 의원 발의(찬성 30명)
-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4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2. 제안이유

- ‘저출산(低出產)’의 사전적 의미는 ‘아이를 적게 낳음’을 뜻하고, ‘저출생(低出生)’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적음’을 의미함
- 따라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감소의 원인과 해결책 마련에 있어서 여성을 객체로 평가하는 등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저출산’을 출생인구 감소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함(안 제3조제1항제12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동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 사용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변화를 유도하고자 발의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의안번호 2783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			-----	
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			-----	
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현행	개정안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기후변화, <u>저출산·고령화</u>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 대책 수립	12. ----- <u>저출생·고령화</u> ----- ----- ----- -----
13. ~ 17. (생략)	13. ~ 1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의 배경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서는 2018년 실시한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후’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개발하고, 2019년 7월 기준 서울시의 자치법규 86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영역별로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전수조사를 위한 점검표는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시민참여보장’ 등 3개 분야 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평가분야	평가항목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1) 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2)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5) 반환권 제약 (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 미비)
	6) 구제권 제약 (과태료 부과징수 법적 근거, 구제절차)

평가분야	평가항목
시민참여 보장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8)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 해당 평가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조항으로 구분되었음.
 - 해당 평가에서는 4개 조례¹⁾ 11개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되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은 해당 평가에서 수정권고된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다. 세부 조례내용 검토 : ‘저출산’과 ‘저출생’

-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논의는 2016년부터 등장하였으며, 당시 ‘저출산’이라는 말이 출산자 여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말이어서 인구정책의 여성 도구화를 초래했으니 이 말을 거부하자는 캠페인이 SNS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음.²⁾

1) ※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2019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8조(중장기 기본계획),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제11조(기업·민간 단체 등의 지원),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3조(포상), 부칙 5146호 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3조(재단의 사업)

2) 배은경(2021). ‘저출생’의 문제제기를 통해 본 한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재생산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검토. 페미니즘 연구, 21(2), 137-186.

- 또한 ‘저출생’은 2020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를 통해 ‘저출산’을 대체할 용어로 소개되기도 하였음.
- 2021년 5월 국회에서는 강민정의원 발의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음.³⁾
- 해당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때, 오히려 세대·지역·계층 등 사회 전반의 종합적 맥락이 축소되고 정책적 대상이 불분명해지며, 출생·양육 과정에서의 여성의 중요성이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⁴⁾
- 또한 현재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12호에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개정안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종합의견

- 조례와 같이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 가운데에서도 차별성과 권위적인 성격을 가지는 용어,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차별용어 또는 권위적 용어로 분류할 수 있는 용어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것은 법령이라는 영역상의 특

3) 해당 개정법률안은 현재 계류 중에 있음.

4) 대한민국 국회(2021.6).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정일 수 있지만, 용어의 어원과 의미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것임.⁵⁾

- 조례와 같은 법령은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만큼,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에 적합해야 함.
- 또한 법령에 사용되는 언어는 널리 사용되는 언어일지라도 권위적·비민주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측면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적절한 용어로 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하겠음.
- 그러나, 국회에서도 저출산이라는 법률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데 신중한 입장에 있으며,
- 현재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아직까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법률의 개정 추이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하겠음.

문 의 처

도미화 입법조사관 (02-2180-8147)

5) 강현철 외(2015),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